전복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941호 2024. 3. 29.(금)

www.jeonbuk.go.kr.

조 례

\circ	조례	제546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0	조례	제5463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2
\circ	조례	제5464호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8
0	조례	제546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9
\circ	조례	제5466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circ	조례	제5467호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15
\circ	조례	제5468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0	조례	제5469호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0	조례	제5470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circ	조례	제5471호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	24
0	조례	제5472호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0	조례	제5473호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28
0	조례	제5474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circ	조례	제547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32
0	조례	제5476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0	조례	제5477호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9
\circ	조례	제5478호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2
0	조례	제5479호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45
0	조례	제5480호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0	조례	제548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58
0	조례	제548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	조례	제548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0	조례	제549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72
\cap	ス레	제5/01 중	저라부드교우처 브레해익시고 커리 민 시고가 ㅂㅎ 드에 과하 ス레 이브게저즈레	74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u> </u>	<u> </u>													
0	고시	제2024	-81 ই	완주농공단	지 관리	기본계	획 변경	고시 ·								· 75
				김제 도시?												
_	_ ,	,,2021	002	L 11 1	1. 11	1 (0)	, ,,	1 - 11 - 1	1 6.11	G 17	_ 0 \ c	. 0 / .	_ '			01
Г																
		입법	예고													
	이버스	레고 제'	2024-2	1호 「전라	보드 시	나지무 고	나라 조리	네 시해	규치.	저브 7	비저규	રો ા-	기버세	J		. 88
				1호 - 전디 2호 전북특												
	нн-	11	2024 2	스포 인커크	근 / 1 / 1 -	T (10	~!! H . 0	1 1 0		H Tr	미 린 1	/II.0-	느네건	нны	خك	31
		공	고													
	고고	ᅰ 2024	- 155 ゔ	비영리민~	나다체 1	미고기	벼겨 드	로고고								128
				비영리민												
				비영리민												
				비영리민												131
				비영리사												132
				비영리사												133
				비영리법의		-										
				비영리민	-											
				비영리민												
				정보통신												
				비영리민조												
				도로공사												
				남원 대복												
				비영리민												
		·		, - , -												
		시시	사항													
\circ	2024	3 22 (금) 간	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	ರ್ಘ									145
	2021.	0. 22.	E / C		_ ' '	, , ,	O									110
		시	군													
0	군산시	시 고시	제2024	4-38호 군4	<u>난</u> 도시계	획시설(도로.대크	로1−4호	선 외 :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기	(a)인가 .	고시 …	148
				4-40호 군												
0	익산서	시 고시	제2024	4-57호 익4	·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	획시설	.사회与	부지시설	널.도로)	결정	및 ス	형도면.	고시 …	155
0	완주급	군 고시	제2024	4-36호 완=	수 군관	리계획(군계획시]설.하~	수도)	결정(변	년경) 및	! 지호	병도면~	승인 고	시	157
0	완주급	군 고시	제2024	4-38호 완=	수 군관	리계획(=	군계획시]설.도:	로, 주:	차장) 7	결정 및	! 지형	병도면	고시 …		158
0	무주급	군 공고	제2024	4-361호 무	주군계획시	· 설(생태모	'험공원) 4	실시계획업	<u>년</u> 기에 대	ෑ른 농업	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	람공고 · ·	159
0	고창급	군 공고	제2024	4-586호 고	창 군관리	계획(군계	획시설도	로, 주차?	항, 공공	공자→도	로) 결정	(변경)(안) 주면] 재열람·	공고	16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취득세는"을 "취득세:"로, "전액을 면제한다"를 "전액 면제"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득세는"을 "취득세:"로. "전액을 면제한다"를 "전액 면 제"로 하다.

제11조제1호 중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를 "경감율: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감율은 100분의 15 로 한다"를 "경감율: 100분의 15"로 한 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 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1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50
-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는 2024년 1월 1일 이 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4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3호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입장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 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 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 는 사람
- 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12시"를 "11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 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내야하며"를 "납입하여야 하며"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다.

①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 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통합예약시스템의 오류로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시설물의 보수 또는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 4.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업무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예약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예약자는 휴양림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휴양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예약금의 환불 등)"을 "(예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를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환불" 을 "반환"으로 한다.

- ②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물 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 는 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③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 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시설물 에 대한 2024년 5월 1일 이후의 사용을 예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요 금	
	구 분	기 준	비수기 또는 주중	성수기 또는 주말	비고
숲속의 집	 30.8m²(4인용) 40.4m²(4인용) 55.9m²(8인용) 62.8m²(8인용) 76.5m²(8인용) 85.0m²(15인용) 	1동/1일	70,000 112,000 126,000 161,000 196,000 189,000	100,000 160,000 180,000 230,000 280,000 270,000	
한옥형 숙박시설	<u> </u>		84,000 168,000	120,000 240,000	※ 비수기 또는주중에는 성수기또는 주말 사용료의할인율 30% 적용
산림문화	○ 16.0m²(4인용) ○ 22.0m²(4인용)	1실/1일	35,000 49,000	50,000 70,000	
휴 양 관	○ 105.3㎡(23인용)	1실/1일	238,000	340,000	

- 1. "성수기"란 매년 7.15~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 "비수기"란 매년 7.15~8.24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3.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별표 2]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제15조 관련)

1.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 분	공제	비고	
	T &	주 중	주 말	비 고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3 ア ハ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_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비수기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_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2. 전북특별자치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구 분	배상	기준	H) T
	T ゼ	주 중	주 말	비고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78 7 7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비수기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도

[별지 서식]

데미샘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사용대장

		결 재
		재

보

1. 근 무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직 급	성 명	서 명

2. 예약제외 시설 예약내용

◦ 예약사유 :	
·사용자:	
• 예약일자 :	
• 사용일자 :	
· 사용목적 :	

3.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이자카스	시설사용 실적						
입장자 수	주 차 장	숲속의 집	휴양관	비고			
均	대	동	실				
	Ï	_	_				

4. 특기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기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4호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 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지역방송
-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
- 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3.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4. 지역사회 현안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ㆍ제작 사업
- 5. 그 밖에 지역방송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결과보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 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관한 사항
- 2.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3.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
- 4.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5. 지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지역방송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지역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그 밖에 지역방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회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 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
-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開催)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방송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6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노동안전보건"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5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5.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노동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도내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노동안전보

건"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4. 산업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대책에 대한 협력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 ③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④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2호 중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재해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내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재해예방"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재해예방"을 "관계"로 하

- 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재해 예방"으로, "각 호의 사업 추진에"를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도내"를 "관내"로, "단체, 업무 담당자"를 "단체" 로 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7호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발굴 및 청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및 식민통치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한다.

- ②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나 사적 재산의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
 - 2.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전북자치도민 홍보 및 교육 사업
 -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 4. 일제 잔재 청산 활동의 확산을 위한 학술, 문화예술 사업
 -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전북자치도내 시·군별 일제 잔재 전수조사 결과
- 2. 일제 잔재별 청산을 위한 처리 방안 또는 과제

- 3. 과제별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 4. 효율적인 일제잔재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5. 그 밖에 효율적인 일제 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2. 일제 잔재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 3.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 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8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 한 자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 미만이면"을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 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69호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Wellness) 관광"(이하 "웰니스 관광"이라 한다) 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 (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웰니스관광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 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웰니스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사항
- 2. 제11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
 -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웰니스 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웰니스 관광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의 지정에 관한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
 -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 6.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 7. 웰니스 관광 컨설팅 ·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 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 에 따른다.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 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0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 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기 금운용계획에는"을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로,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된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1호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2. "지원대상자"란 제4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을 말한다.
-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위기상황의 결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시장·군수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항목)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 2. 의료비
- 3. 주거비
-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5. 교육비
- 6. 연료비
- 7. 해산・장제비
- 8. 전기요금

제8조(중복지원금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적용법규)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2호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 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2. "스토킹행위자"라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 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 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등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사항
-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 · 주거지원 등 지원사업
-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사업
-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
 -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단체,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3호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도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재해·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교육적·사회적·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 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 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3. 중도장애인 학업 · 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 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전북자치도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4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관 공기업 · 공사
- 4.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명하는 자로 한다"를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가「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2명 이상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 다)
 -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제5조(종전의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자문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문한"을 "자문이 필요하"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의 타당성"을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으로, "영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2항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으로 하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 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발주청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도 미지급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도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 2.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
 - 가. 소송에서 전북자치도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 나.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 유사하여 전북자치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 미지 급용지의 적합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등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신청) ①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소유자
-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 ②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 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도 미지급용지

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 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3.「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설치한 도로
 - 5.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 6.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제6조(사실조사 등) ① 시장·군수는 보상 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현장 방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방도 미지급용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액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의 결과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5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
 - ② 시장·군수는 감정평가 의뢰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
- 2.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 3. 그 밖에 도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
- ③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 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 다.

제8조(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제9조(통지 등) ①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서			
토지	주 소					번호 : 전화 :)
소유자	성 명				생	년월일		
		5	E 지 소 재	지		- 지	목	면 적
신청지	시·	군	읍/면/동	지	번		<u> </u>	(m²)
T 0 1								
			총 면	적				
토지 현황	도로 (아스팔트	트포장, 콘크리트포	장, 보도를	블럭포설	<u>l</u> , 기타(해당린	에 ○표시)
	타 하	입된 위	위, 보상금 미수터				지급히	·여 주실 것 일
					U	3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00시	장·군수 =	귀하						
			구 비 사	류				수 수 료
	지등기투			''				7 7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6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을 "시행규칙과 「농어촌정비법」,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 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 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 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 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 업"이라 한다.
-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

자일 것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일 것.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권리가액"이란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 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4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빈집정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빈집 관리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 2. 시 · 군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분석
- 3.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 4.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소요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3(빈집의 관리) ① 빈집 소유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 등 빈집의 방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관리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4(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 3. 소방·보안·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5(빈집정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5조의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별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6(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7(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 간위탁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 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 ·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 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단 중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7호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 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 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 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2. 바이오산업의 국내 · 외 현황과 시장 전망
-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
-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
- 4. 국내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
- 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 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 · 인증 지원
- 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국 · 공립 연구기관
 - 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유치를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2. 바이오산업 중소 · 벤처기업 육성
- 3. 제5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및 위탁
- 4.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벤처기업 임원
 - 2.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혐의회의 우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 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1조(준용) 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 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 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8호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 4. "인삼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 여 전북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 · 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 ・제조・포장・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인삼경작 농업인 ·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삼산업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4조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위원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辭)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79호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 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푸드"란 모든 음식물 또는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 다.
- 2.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
-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 · 관 · 학 · 연 등과의 협력방안
-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도내 · 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7.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진흥계획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8조 따른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 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활용
-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 4. 푸드테크산업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 6.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 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 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정부,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 5. 푸드테크 관련 인증 연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 단체
- 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 게 할 수 있다.

- 1. 푸드테크산업의 기획 및 추진
- 2. 푸드테크 인증 및 연구 지원
- 3. 기업 지원 및 통합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
-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푸드테크 분과 위원회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무한다.

-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푸드테크 인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 6.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이하 "인증 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0호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 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내수면"이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 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하다.
- 2.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양 식시설물을 설치 ·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수산동식 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 업법 시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하다)는 전북특별자치 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 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

-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
- 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 · 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 2.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한 지원
- 3.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 4.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산인, 어업인과 전북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 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2. 지원대상의 선정
- 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 점검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전북자치도 수산담당과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내수면어업 단체 대표
 - 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 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 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 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 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휴가"를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만 4세"를 "4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 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 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 가산을 하지 않는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본인	5
결혼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비고 : 1.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만 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5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	н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	원	월 1,500,000원	월 500,000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 레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 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부 칙

제2941호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 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학생"이란 제1호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
- 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갂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 2.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 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
 -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
 - 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
 - 7.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방안
 - 8.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 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
 - 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연수 프로그램 운영
 -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과정과의 연계)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홍보 및 학생·교직원·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

- 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 先)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의료기 관.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 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장애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제 1항제9호에 따른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나.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 는 학생
-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 등의 학교를 말한다.
- 3. "원격수업"이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 병원 등 원거리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 4. "순회교육"이란 건강장애로 인해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6.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 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7.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건강장애학생을 사실상 보

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 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4.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 6.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의 발병유형과 치료 여부를 조사· 관리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병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교육감은 출석확인서를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특수교사 외에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병원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 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 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원격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출석 확인은 원격수업 수탁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한다.
 - 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생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③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개별화교육) 건강장애학생의 학교장은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 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 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 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3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교육 및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심리 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 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 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 지도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칙 부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1. 장애학생 편의지원 추진목표 및 방향
- 2.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 8.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기관·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1.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3. 제7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 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하거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보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8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의장"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다.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공동의장이 정한다.
- 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2941호 도 보 2024년 3월 29일

	•								
					н	-a)			
					부	싁			
	이 조례는	고고하 1	나보티 ス] 채 하다					
	의 소네는	0 工程	현무니 ^	1생인다.	•				
1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8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 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 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1.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 2.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결혼의 자녀란 다음에 결혼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별표 2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란 다음에 사망의 "본	인 및 배우자 부모
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1 별표 3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으로 하고, 본문 중 "2일"을 "3일"로 한다. 제2941호 도 보 2024년 3월 29일

	부	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본 인	5
결 혼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 무원법 :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학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 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
 - 3. 학생의 생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 5. 학생의 전북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
 - 6. 학생의 진로 교육에 관한 사업
 - 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 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 하는 사업
- 제5조(업무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 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라 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1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를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1호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1. 농공단지 개요(변경)

가. 농공단지 개요(변경)

- 명칭 : 완주 농공단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388번지 일원
- 면적: 298.312.9 m²
- 사업시행자 : 완주농공단지개발(주)
- 사업기간 : 2016년 1월 21일 ~ 2022년 3월 31일
- 나. 관리기관: 완주군 (변경없음)

다. 조성목적(변경없음)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변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라. 추진경위(변경없음)

- 2017. 05. 15. : 특수목적법인 설립(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
- 2017. 12. 11.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8. 03. 30. : 2018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8. 10. 25. : 전라북도 개발계획 승인
- 2018. 11. 22. : 완주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완주군고시 제2018-72호)
- 2018. 12. 22. : 완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완주군고시 제2018-83호)
- 2019. 10. 25. :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북도고시 제2019-249호)
- 2021. 04. 23. :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고시 제2021-45호)
- 2021. 07. 30.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1-260호)
- 2021. 12. 30. :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고시 제2021-126호)
 - (1) (1) (1)
- 2022. 02. 04.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2-26호)

- 2022. 03. 03. :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고시 제2022-21호)
- 2022. 03. 31. : 완주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완주군공고 제2022-569호)
- 2022, 08. 12. : 왓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2-193호)
- 2023. 03. 10.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3-72호)
- 2023. 10. 27. : 왓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3-307호)

마. 입지 및 기반여건(변경)

- 입지여건
 - 북측에 완주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한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 단지가 운영 중이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임
 - 호남고속도로 삼례요금소에서 4km, 익산-포항 고속도로 완주요금소에서 10k내에 위치하고 있음
 - 완주 삼봉택지개발지구와 1km 내에 위치하고 있음
 - 동측에 과학로와 서측에 테크노밸리로가 연접하여 접근성이 양호
- 기반시설 여건

시설명	계획내용
도로	∘ 일반도로 - 중로(8개노선) : 31,777.3㎡(2,728m) - 소로(1개노선) : 286.4㎡(88m)
용수	∘ 총 용수량 : 1,025㎡/일 - 공업용수 : 537㎡/일 - 생활용수 : 488㎡/일
전력	。 동시부하 15,657kW, 비동시부하 21,138kW (봉동변전소 공급)
통신	◦ 161회선
오수처리	∘ 총 오수량 : 767㎡/일 (완주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공업폐수 : 342㎡/일 - 생활오수 : 425㎡/일

2.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및 농공단지 발전 계획(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18개분야)(변경없음)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C23995) 탄소섬유 제조업
-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L6811) 부동산 임대업(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 발전업

나. 입주 제한 업종(변경)

- 니켈, 벤젠 등 발암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업종
-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
-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1ppm 이하 적용 등
- 수질 오염물질 페놀을 배출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16개 업종
- C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C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5922 : 도금업
- C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C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C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C28202 : 축전지 제조업
- C28511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C28119 : 기타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C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C31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C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C33110 :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C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H52104 : 위험 물품 보관업 단, 발화성·인화성 등 화재·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등) 배출 우려가 없는 업종은 입주 가능
- ※ 6가크롬은 임계가중배출량(19,905.8kg/년)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시 입주제한 또는 입주기업에 저감대책 등 요구
- ※ NO₂ 연료사용 저감대책,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공장 및 건축 인·허가시 조건으로 반영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체로 제조업 또는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한국자산 관리공사
-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관련 업체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 업종

마. 발전계획(사후관리)(변경없음)

-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서에 의함
-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 공해배출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 독려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도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 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3. 생산·수출 및 고용 전망(변경)

가. 생산 및 수출 전망(변경)

구 분	생산액(억원)	수출액(천\$)	비고
완주 농공단지	1,829	34,935	산업시설용지면적 변경없음

※ 자료 : 통계청

※ 주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공단지 분양면적(천㎡)당 생산액 및 수출액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계상

나. 입주 및 고용계획(변경없음)

입주업체수(계)	면 적(m²)		고용인원(명)	
산업시설	산업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55	233,367	1,531	1,127	404

※ 입주업체 및 고용인원은 분양 및 입주업체, 공장설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인력수급 전망(변경)

○ 완주군 1천5백명, 익산시 4천4백명, 전주시 1만9백명의 취업가능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완주농공단지의 계획인구(1,531명)를 수용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예상

구 부		경제활동인구(천명)		
	구 분	취업자	취업가능인구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932.0	24.0	
취업가능 인구	완주군	51.8	1.5	
인구	익산시	141.4	4.4	
	전주시	329.4	10.9	

- ※ 자료: 통계청, 2020
- ※ 주: 통계청의 실업자를 취업가능 인구로 계상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변경)

도

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변경)

- 완주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로 인하여 약 1,531명의 고용 증대, 이 중 현지인은 1천5백명 수준의 고용 효과 기대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mark>전북특별자치도</mark> 내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5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9억원, 취업유발효과 5,007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59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7억원, 취업유발효과 3,534명으로 분석됨
-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1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5억원, 취업유발효과 8,541명으로 분석됨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변경없음)

○ 입주기업의 직종별 고용인력 전망

유치업종	고용인원 (명)
Й	1,127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995) 탄소섬유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490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903) 벽지 및 장관지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2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6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4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9
(C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71

※ 자료: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5.07.) 전국산업입지 원단위 등록자료(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9.12.06.)

6. 인근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변경)

가. 경쟁력에 관한 전망(변경없음)

○ 인근 산업(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을 살펴보면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업종이 특화되어 있어 해당 산업단지의 업종과 연계하여 와주군의 특화산업 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협력강화 방안(변경)

○ 완주산업단지, <mark>전주</mark>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등의 기 조성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구 분	조성면적 (천m²)	- ' 숙포입 '' ' '		주요 유치업종		
	완주산업단지	3,359	1994년	83	석유화학16, 기계15, 전기전자4, 운송장비47, 비제조1		
산 업	<mark>전주</mark> 과학 산업연구단지	3,074	2001년	128	음식료2, 석유화학12, 철강1, 기계28, 전기전자19, 운송장비66		
년 단 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1,314	2014년	18	기계12, 전기전자2, 운송장비4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2,110	2023년	95	비금속 광물제품,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서농공단지	398	1991년	3	섬유의복2, 목재종이1		
농 공 단 지	완주 농공단지	297	2022년	55 (예정)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 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제품,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역 계획(변경없음)

구 년	분	면적(m²)	비율(%)	비고
총면	적	298,312.9	100.0	
	소계	233,367.0	78.2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	154,718.6	51.8	
	물류시설	78,648.4	26.4	
지원시설구역		6,625.7	2.2	
공공시설구역		40,582.8	13.6	
녹지구	구역	17,737.4	6.0	

※ 붙임 1 :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보

나.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변경없음)

업종	면적(m²)	비율 (%)	비고	
	233,367.0	100.0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995) 탄소섬유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92,321.2	39.6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11,161.2	4.8	한국표준
(C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12,954.3	5.6	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 13호,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7,573.2	3.2	2017.1.13.)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27,409.1	11.7	
(C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99.6	1.4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8,648.4	33.7	

※ 붙임 2 :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 제한업종(세세분류 16개업종)

C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28202 : 축전지 제조업

C2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8511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C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8119 : 기타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C25922 : 도금업 C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C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C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C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H52104 : 위험 물품 보관업

 C3111 : 선박및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C31322 : 항공기용부품제조업

8. 공동이용건축물, 기타 공공시설 및 폐수처리장 설치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공동이용시설(변경없음)

○ 공동이용 시설물 설치

대지 위치	완주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면적(m³)	6,625.7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층 수	6층 이하

나. 운용계획(변경없음)

- 종사자의 이용편의와 생산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시설을 배치
- 이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9.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관리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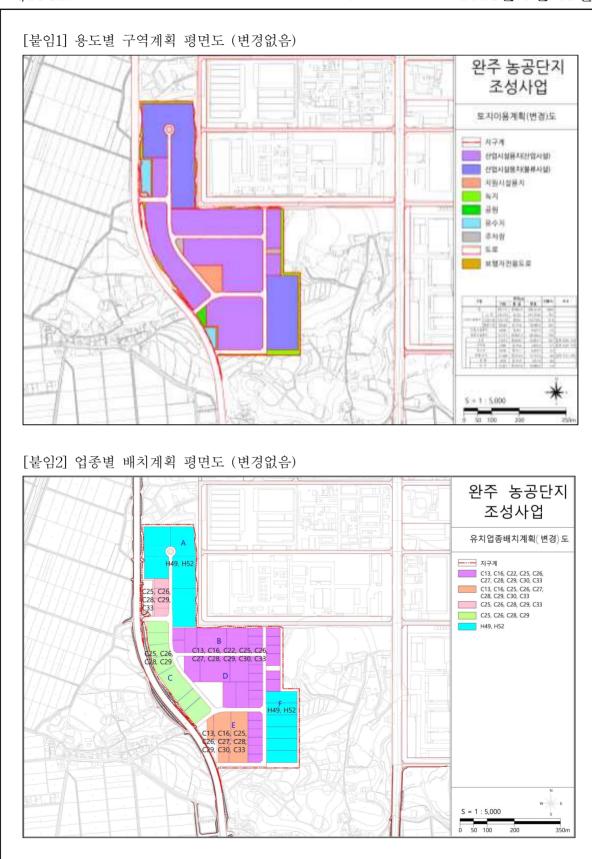
-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기타 공공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원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 기능, 기업생산 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 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하 근로환경에 적합하 후생 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다.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원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3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 및 김제시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3월 29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후] " "
	합 계	545,023,733	-	545,023,733	
	도시지역	44,158,904	-	44,158,904	
	비도시지역	500,864,829		500,864,829	
	소 계	232,923,324	=	232,923,324	
코 카카카여	보전관리지역	76,490,463	감) 65,923	76,424,540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71,744,862	감) 10,757	71,734,105	
	계획관리지역	84,687,999	증) 76,680	84,764,679	
농림지역		239,721,505	_	239,721,505	
자	-연환경보전지역	28,220,000	=	28,220,000	

[※]기장,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제시 고시 제2023-73호, 2023, 12, 2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지역	면적	용적률	->->(->->)		
표시 번호	위치	기정	1	변 경		(m²)	_ , , , _	결정(변경)사유
	김제시	자연녹지지역	6,432	자연녹지지역	6,432		100%이하	
	만경읍	보전관리지역	243,584	보전관리지역	177,661	415 501	80%이하	• 만경 능제유원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_	능제	생산관리지역	10,757	생산관리지역	-	415,591	00%0~10F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함
	일원	계획관리지역	154,818	계획관리지역	231,498		100%이하	이 보기 점

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 조서

7 19	도면 표시	시설명	o) =1		면 적(m')		최 초	ען ד
구 분	변호 변호	시설병	위 치	기정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신설	2	유원지	김제시 만경읍 능제 일원	_	증) 415,591	415,591	금회	

○ 유원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원지	• 유원지 신설 - 위치: 김제시 만경읍 능제 일원 - 면적 : 415,591㎡	• 만경 능제 일원의 수변경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가 및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 원지로 지정하고자 함

다. 유원지 조성계획

○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m')	구성비(%)	비고
합계	415,591	100.0	
관리시설	49,638	12.0	주차장, 도로
유희시설	15,477	3.7	스카이바이크, 그린키즈파크
운동시설	13,218	3.2	홀스힐링파크, 경관교량
휴양시설	19,552	4.7	펜션파크, 펫그라운드, 캠핑파크
특수시설	135,916	32.7	광장, 연꽃학습원, 토피어리파크, 파인트리파크
편익시설	2,645	0.6	테마상가, 전망대
기타시설	179,145	43.1	녹지 및 수면 (음악분수)

보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세부 시설명	시설 번호	면적 (m³)	비율 (%)	건축 면적 (m')	건축 연면적 (m')	충 수	동 수	건축 용도	비고
	L 합계		415,591	100.0	6,121	10,335	_	33		
	소 계		49,638	12.0	200	200	-	3		
	도로	1	32,251	7.8	=	=	-	-		일부 기조성, 데크포함
	주차장계		17,387	4.2	200	200	_	3		총 468면
관리	주차장A		3,581	0.9	40	40	1	1	관광휴게시설 (화장실)	기존시설 55면
시설	주차장B		1,162	0.3	_	_	-	-		27면
	주차장C	2	2,602	0.6	40	40	1	1	관광휴게시설 (화장실)	85면
	주차장D		6,681	1.6	120	120	1	1	관광휴게시설 (관리소)	174면
	주차장E		2,610	0.6	_	-	-	_		103면
	주차장F		751	0.2	_	_	_	_		24면
	소 계		15,477	3.7	_	-	-	_		
유희 시설	스카이 바이크	3	5,052	1.2	_	_	-	-		연장: 1,074m
	그린키즈파크	4	10,425	2.5	_	_	-	-		
	소 계		13,218	3.2	2,733	2,985	-	11		
운동 시설 -	홀스 힐링파크	5	11,052	2.7	2,733	2,985	1	11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관리사, 창고)	기존시설
, e	경관교량	6	2,166	0.5	-	-	-	-		폭원:4m 연장:448m
	소 계		19,552	4.7	2,399	5,458	_	12		
휴양	펜션파크	7	5,098	1.2	2,039	5,098	1~2	10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시설	펫그라운드	8	10,093	2.4	240	240	1	2	야영장시설 (관리동, 화장실 등)	16면
	캠핑파크	9	4,361	1.1	120	120	1	1	야영장시설 (관리동, 화장실 등)	18면
	소 계		135,916	32.7	160	160	_	2		
	광장계		3,951	1.0	-	_	_	_		
	진입광장		1,187	0.3	-	_	_	_		기존시설
특수	전망광장	10	1,620	0.4	=	_		_		기존시설
시설	원형광장		1,144	0.3	-	_		_		
	연꽃학습원	11	93,276	22.4	-	-	-	-		기존시설
1 -	토피어리 파크	12	15,836	3.8	120	40	1		관광휴게시설(화장실)	
\vdash	파인트리 파크 소 계	13	22,853 2,645	5.5 0.6	120 629	120 1,532	1	4	관광휴게시설(화장실)	
편익	도 세 테마상가	14	1,368	0.8	547	1,368	2		근린생활시설	
시설	전망대	15	1,277	0.3	82	164	2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소 계		179,145	43.1	_	_		_	(
 기타	<u> </u>	16	54,449	13.1	_	_	_	_		음악분수
기년 시설	원형보전녹지	-	10,164	2.4	_	_	_	_		рјеј
	녹지	_	114,532	27.6	_	_	_	_		

■도로 결정조서

【 총괄표 】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 계	16	4,487	30,105	2	720	3,887	-	-	_	14	3,767	26,218
중 로	4	1,437	17,419	-	-	-	-	-	-	4	1,437	17,419
소 로	12	3,050	12,686	2	720	3,887	-	-	-	10	2,330	8,799

[※]도로 총 면적은 데크면적(2,146㎡)을 제외한 면적임

【 결정조서 】

		7	모			연장				
구 분	둥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신 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293	묘라리 산89-1임	묘라리 471대	일반도로	
신 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200	장산리 산156-1임	장산리 293-11임	일반도로	
신 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549	장산리 산181임	장산리 산157-2임	일반도로	
신 설	중로	3	4	12	집산도로	395	장산리 산157-2임	장산리 산152-1임	일반도로	
신 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661	묘라리 산86-9임	묘라리 501-1임	일반도로	
신 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59	묘라리 529-1임	묘라리 528-2도	일반도로	
신 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196	묘라리 471-5임	묘라리 520-4임	일반도로	
신 설	소로	3	2	2	특수도로	42	묘라리 471-5임	묘라리 465유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3	5	특수도로	285	묘라리 산85-1임	묘라리 471-5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4	2	특수도로	26	묘라리 471-5임	묘라리 465유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5	3	특수도로	260	묘라리 528-3유	묘라리 1유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6	4	특수도로	200	만경리 726-9유	만경리 735-4묘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7	6	특수도로	24	만경리 642-1유	만경리 692-2묘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8	5	특수도로	366	장산리 300-1임	장산리 산146-3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9	3.5	특수도로	286	장산리 산146-3임	장산리 산142임	보행자 전용도로	
신 설	소로	3	10	2.5	특수도로	645	장산리 산142임	장산리 327-1유	보행자 전용도로	

2.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063-280-3613) 및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21호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1. 개정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개정 사항(시행 '24.1.18.) 반영 나.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및 도민참여단 운영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정비(안 제1조~제3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조~제10조)
 - 브랜드·상징물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위원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브랜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 해촉, 수당 지급 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다.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6조)
 - 브랜드·상징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 내용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

담당관(인권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예산과(재정

부담), 자치행정과(위원회), 법무행정과(법제검토)

라. 입법예고 : 2024. 3. 29.(금) ~ 4. 18.(목)(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통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 도청 소통기획과 (전화 063-280-2074)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통기획과 소통기획팀(063-280-20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디자인 표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디자인표준은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조(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도기 게양 및 관리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 상징물 · 브랜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 3.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 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

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 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 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고, 서기는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도민참여단) 도지사는 도민이 주도하는 상징물·브랜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도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참여단의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상징물 브랜드의 확산을 위 한 도민 참여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2. 전북자치도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및 실행
- 3. 상징물 ·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4. 전북자치도의 상징물 · 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지원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 제13조(참여단의 구성) ① 참여단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 다.
 - 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참여단 모집 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14조(참여단의 운영) 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 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 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참여단의 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 제16조(참여단의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 다.
 - ② 도지사는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기 게양 및 관리방법 등

1. 도기 게양 및 강하

- 가. 도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나. 도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게양 및 강하 시각은 다음과 같다.
 - 게양시각 : 오전 7시
 - 강하시각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6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오후 5시
- 다. 도기를 국기와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먼저 게양한 후 도기를 게 양하고, 강하 시에는 국기를 먼저 강하한 후 도기를 강하한다.
- 라. 도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원형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2. 도기의 게양방법

- 가. 국기와 동시에 게양시에는 정면에서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나. 도기와 국·내외 자치단체의 기를 교차하여 게양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도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다만, 외국에서 게양할 경우에는 외국자치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3. 도기의 장식

- 가. 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 도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 나.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2	941호		노	보		2024년 3월 29일	=
		깃대의 제작 : 깃년 제10조와 제11조의			하여는 「	대한민국국기법	
	5. 도기의 :	소각 : 도기가 훼손	된 때에는 이	를 소각하여	후 한다.		

참고 1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규칙(안) 제10조(수당 등) 및 제16조(참여단의 활동지원)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및 도민참여단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 상 :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및 도민참여단

나. 전 제 : 비용추계 시점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추계실시

다. 방 법: 브랜드위원회 수당 및 세미나 등 개최비용, 도민참여단 활동

수당(실비) 등 예산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브랜드위원회 수당	6	6	6	6	6	30
세미나·포럼 등 개최	140	140	140	140	140	700
도민참여단 수당(실비)	8	8	8	8	8	40
계	154	154	154	154	154	77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국 비						
도 비	154	154	154	154	154	770
시 군 비						
자 부 담						
합 계	154	154	154	154	154	770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과 협의

7. 작 성 자 : 소통기획과 행정8급 조영주(280-2074)

참고 2 관계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조례」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디자인표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상징물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도민참여 방안
 - 4. 국내 · 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22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심의 환수 기준을 개선,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법령 정비기 준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반영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2조)
 - ※ 4급 이상 공무원 → 관리직 공무원(도 4급,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 도록 개선(안 제6조)
 -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마련(안 제9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다. 그 밖의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예산과 협의

다. 합 의: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

(인권영향평가), 법무행정과(법제),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자치행정과(위원회)

라. 입법예고 : 2024년 3월 29일 ~ 4월 18일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②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 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체납징수팀(전화: 063-280-2382, FAX: 063-280-231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63-280-23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 1항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로, "자를 말한다"를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라"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로,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를 "부과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을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을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이상"을 "이상(시·군은 5급 이상) 관리직"으로 한다.

- 4.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경우:"를 "경우:"로, "100분에"를 "100분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로, "100분에"를 "100분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우:"를 "경우:"로, "100분에"를 "100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片

"자:"를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로, ""신고"이"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제공"을 "자료 제보서"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급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시·군소속 공무원 및 시장·군수에게 신고 등을 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시·군소관 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을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북특 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 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시·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시·군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포상금지급신청"을 "포상금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시·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불복청구절차"를 "불복청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를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급하였거"를 "지급하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이를"을 "지급한 포상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별지 제8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 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관련 대장은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별지 제1호서식)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l. 피제보자 인적	사항						
○ 성 명: ○ 주 소: ○ 탈루 물건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2. 제보자 인적사○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O 4	생년월일 :				
: 제ㅂ내용-							
			하고 관련 증명서 ^휴 가능	루를 첨부 	하되		
	많은 경우 별		가능			(인)	

도

보

(별지 제2호서식)

체난자 으닐재사 시고서

접	수연월일		접수번호		접=	수방식	
피시	주 소				,	,	
피신 _ 고자	성 명			생년월일			
신고	주 소		전화변	<u> </u> 호(8)			
자	성 명			생년월일			
은닉 7	재산 신고내용						
특이/		보안사항 등)					
특이/	사항		20	· · · 신고자	(인)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앞 7자리	
િ યે જે થ	주 소	전화번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	제 출 일 자	제출부서	
포 상 금 지급신청	지급시기 확 정 일		
안 내 문 내 용	포 상 금		
페기지지 그	금 융 기 관	E zl O Al zl	
계좌신고	계 좌 번 호	통장용 인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포상 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F 번	민 등 록 호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호 관	료 제 출 서	
	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급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은닉재산 제보포상금을 지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

(금액:원)

			급 액			
구 분		건 수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 산 금	계	포 상 금
계						
1년이상 경과세원발굴						
체 납 애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 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도 지 사

참조 : 세정과장 발신 : 과장(본청), 사업소장, ○○시장·군

수 등

(금액:원)

구 분				~) =		
		건 수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 산 금	계	포 상 금
	계					
1년	이상 경과세원발굴					
체	1년차					
납 액 징	2년차					
수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별지 제7호서식)

1년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부	· - - - - - - - - - - - - - - - - - - -								
납기	소속	직급 (주소)	성명	과목	구분	발굴 세액	징수 년월일	건수	포상금	비고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보

(별지 제8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부과자((제보자)	1.5		발굴	납세의	무자	징 수	담당	
납기	(주 소)	성명	과목	구 분	세원	주소	성명	년월일	확인	비고

보

(별지 제9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 u	발굴	납세의	무자	징 수	담당	н]
구 분	세원	주소	성명	년월일	확인	고

(별지 제10호 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징수 및 포상금 지급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체 납			징 수			포 상 금	
과세 년도	성 명	생년 월일	세목	징수액	징수일	공적내용	신청액	지급율	사유

징수자: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증대에 기 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한다) 제146조에 따라 ——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도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1. 버려지거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부과한 자.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로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	3.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신 설>	4.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신 설>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상(시·군은 5급 이 상) 관리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	는 자에?	게는 다	구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급	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 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③ ~ ⑤ (생 략)

-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한다.

1. (현행과 같음) 2	
2. — 7}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경우:
나	경우:
100분의	
다	
경우: 100분의	
3	
	
② (현행과 같음)	
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보서---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 및 시장·군수에게 신고 등을 한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시·군 소관 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삭 제>

③ (생략)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시·군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시·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아니한다.
 - ③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 수가 해당 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 군 공무원으로 해당 시ㆍ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포상금은 해당 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 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③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

2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서)
② 도지사
A).
군위원회

3
시·군위원회

Ⅱ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신
청	
시·군위원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	. 41231
물복청구 절차	

- ③ (현행과 같음)
- ④ -----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

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생 략)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 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 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령」 제37조----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급하였으----

-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①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 수내역, 별지 제8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에 대한 부과ㆍ징수 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 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 · 징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포상금 지급관련 대장은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4. 삭제 <2020. 12. 29.>(2024.1.1.부터 시행)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4.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다.
-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

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 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 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3. 3. 14.>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 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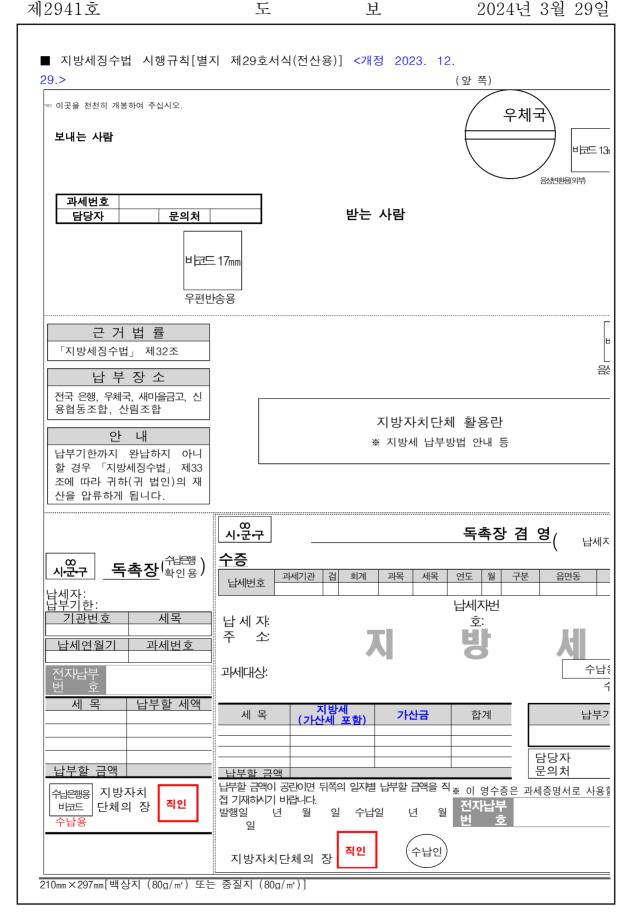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뒤 쪽)

안 내 맠 쓱

-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3. 독촉장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일마다 ()%의 납부지연가산세(체납분)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 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

일자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금액	
크시	가산세(체납분)	합계		

이 지 농어촌		특별세	납부할 금액
일자	가산세(체납분)	합계	리구일 급액

-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6. 독촉장에 고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ATM과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odot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Rightarrow [지방세납부 등] 선택 \Rightarrow [납부번호입력] \Rightarrow [납부]
-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지방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결

-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지방재정법〉

-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

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 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 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

-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

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 액
-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세정과 지방세무6급 윤양호(063-280-2382)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55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 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1. 등록번호 : 제2000-1-전북특별자치도 - 83호

2. 단체명칭: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중동길 18

4. 대 표 자 : 빈 중 욱

5. 주된 사업

- 지역 새마을운동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 교육 및 교양 교육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자원봉사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丁 正	변 경 전	변 경 후	미부
대표자	이 상 수	빈 중 욱	

7. 허가(변경)일자 : 2024. 3. 8.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34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북특별자치도-6호

2. 단체명칭 : 남원YWCA

3.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림로 45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노길희

○ 생 년 월 일 : 1971. 11. 6.

- 5. 주된 사업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성인교육
- 여성지위 향상 사업
-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사업 등
- 복지관 및 보육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
- 청소년·가정·성폭력상담 및 관련사업
-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一	변 경 전	변 경 후	미끄
대표자 변경	유 정 이	노 길 희	

7. 허가(변경)일자 : 2024. 3. 21.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48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명칭 변경)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동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 공고사항

① 등록번호 : 제 2000-1-전라북도-14호

② 단체명칭: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③ 대 표 자 : 심명순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⑤ 주된사업

- ㅇ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향상
- ㅇ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 ㅇ 농촌지역사회 발전 도모 등
- ⑥ 변경사항

7 11			धो न
一 一 世	변경 전	비고	
단체명칭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 기타 문의사항은 자원경영과 전통식품실 송미현(290-6101)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50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1. 등록번호 : 제2000-1-전북특별자치도 - 85호

2. 단체명칭: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3.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8층

4. 대표자:이종서

5. 주된 사업

- 바르게살기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바르게살기운동 과제의 선정과 홍보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丁 正	변 경 전	변 경 후	미포
명칭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대표자	이 대 갑	이 종 서	

7. 허가(변경)일자 : 2024. 3. 20.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53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스포츠안전협회
- 2. 대표자 : 류승민
- 3. 주된 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5 엘디빌딩, 5층
- 4. 주된 사업
 - 스포츠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 스포츠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
 - 생활체육 관련 종목에 대한 스포츠안전 연구사업
 -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이벤트, 세미나 개최 및 교류사업
 - 도핑 및 인권 등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변경연월일 : 2024. 3. 21.
- 6. 변경구분 : 법인명, 사업내용 정관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54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고창군스포츠클럽
- 2. 대표자 : 김정강
- 3. 주된 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 4. 주된 사업
 - 군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 연간 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 군민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선수 육성반 운영
 -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공익사업
- 5. 변경연월일 : 2024. 3. 21.
- 6. 변경구분 : 법인명 및 정관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56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 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1976-6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95, 4층

4. 대 표 자 : 조 오 익

5. 설립목적 :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지역 관광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 변경 허가사항

현 행(구)	개 정(신)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단법인 <u>전라북도관광협회(</u> 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JEOLLABUK-DO TOURISM ASSOCIATION(약자 J. T. A)】이라 표시한다.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JEONBUK-DO TOURISM ASSOCIATION(약자 J. T. A)】이라 표시한다.

7. 변경 허가일자 : 2024. 3. 21.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6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3월 29일

- 공고사항
- ① 등록번호: 제2000-1-전라북도-148호
- ② 단체명칭: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이욱형
 - 생년월일 : 1956년 3월 10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37 (새마을지회2층)
- ⑤ 주된사업: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백정진 → (변경) 이욱형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3. 22.
- ※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80호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등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 거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명칭 등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북특별자치도-23호

2. 단체명칭: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전주지구연합회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22. 2층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온 은 아

○ 생 년 월 일 : 1973. 5. 10.

- 5. 주된 사업
-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개발
- 청소년 육성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 6. 변경 내용

7 8	변 경 내 용		비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단체명칭 변경	걸스카우트 전주지회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전주지구연합회	
소재지 변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0-50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22. 2층	
대표자 변경	곽 영 신	온 은 아	

7. 허가(변경)일자 : 2024. 3. 26.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8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사항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에 의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등록	분할합병	1된 법인	분할합병후	조속법인	수리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일자
160139	주식회사 대서전력 대표 육금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수길 56(사정동)	주식회사 삼경이엔지 대표 이민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수길 56(사정동)	'24.3.22.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9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03월 29일

- 공고사항
- ① 등록번호: 제2000-1-전라북도-145호
- ② 단체명칭: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안성준
 - 생년월일 : 1965년 10월 25일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98 (고창군 농업인회관2층)
- ⑤ 주된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영농 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등

- ⑥ 변경내용
- 대 표 자 : (당초) 이종면 → (변경) 안성준
- 소 재 지 : (당초)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농산물유통센터2층)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98(고창군 농업인회관2층)
- ⑦ 허가(변경)일자 : 2024. 3. 25.
- ※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593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 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29일 전 북특별자치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복흥~순창 (지방도 792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2개소(내접원 지름 27.0m)		
도로공사 구간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829-2번지 일원(지방도 792호선)		
도로공사 시행장소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829-2번지 일원(지방도 792호선)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4. 4.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4. 12.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기형적인 교차로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96호

남원 대복사 동종 도 지정 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제16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3월 29일

- 1. 공 고 명 : 남워 대복사 동종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 2. 예고내용
- 가. 문화재 명칭 : 남원 대복사 동종
- 지정종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1973.6.23, 지정)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복사길 61. 대복사
- 수량 및 크기 : 1구(전체 높이 96.3cm, 입지름 58.5cm)
- 시 대: 1635년(조선 인조 13)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복사
- 해제 예고 사유
-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에 따른 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 3. 지정해제 예고일 : 도보 공고일
- 4. 지정해제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 5. 의견제출

위 지정해제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 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청이나 남원시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재 지정해제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063-280-3147 / 전송: 063-280-2539

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063-620-6173 / 전송: 063-620-6707

붙임 남원 대복사 동종





<남원 대복사 동종>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3월 29일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
 -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실이 없는 단체

연 번	단체명	소재지	댓표 자	등록일자
1	진안미래희망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2	방상근	2013.3.22.
2	사회복귀지원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5 (우아동3가)	이만수	2008.10.8.
3	군산기초질서지도위 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201 (경암동)	유영준	2008.10.2.
4	칭찬운동실천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하정동 198번지 2호 구군청 3층	신홍수	2008.2.12.
5	사)범국민예의생활실 천운동본부고창군지 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8번지 1호 유회소	송영래	2007.11.1.
6	익산고전독서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637-2번지 지하 1층	이규한	2007.4.12.
7	사)미래전북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경원동3가 72-7번지	오석근	2007.4.11.
8	호남 웅변 리더십 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2, 4층 (서신동)	이달금	2005.8.3.
9	학도병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48-3 (전동3가)	진석현	2004.10.1 8.
10	지역발전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 (금암동)	이상휘	2000.5.16.

②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063-280-2505)
- **(회신기한)** 2024. 4. 12.(금)까지

③ 금후계획

○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도지사 지시사항

◇ 2024. 3. 22.(금) 15:1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7	악취 관리 방안 마련 철저	 ○ 생활악취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민감도가 증대되는 등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 환경국을 중심으로 그간 악취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정리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기 바람 ○ 아울러, 우리도 악취 관리 계획 및 방안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바람 (주관: 생활환경과/협조: 농생명축산식품국, 보건환경연구원)
	당면·현안업무	 ○ 도 출연기관 등 혁신 노력 철저 - 도정 현안 공유 및 협력을 위해 한달에 한번 간부회의 시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임 - 산하기관별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바람 -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현장행정의 선두에 있으므로, 책임감과 자궁심을 가지고 도정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람 (주관: 도 공기업·출연기관 등/ 협조: 관련실국)
		 ○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철저 -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앙 공모계획을 파악하고, 월별 목록화하여 공모사업별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바람 - 특히, 대형사업 등 중요한 공모의 경우 관련 동향을 지휘부에 수시로 보고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람 (주관: 정책기획관/협조: 전 실국)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재정 신속집행 노력 철저 - 어려운 민생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는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주관: 전 실국, 전 산하기관)
		 도의회 의정발언 추진상황 점검 철저 실국에서는 도의회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의·결의안 등을 목록화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의원에게 추진상황 및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
		으로 소통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
		○ 현안 법안 통과 추진 전략 수립 철저 - 총선 이후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4월말)가 대광법, 공공의대법 등 우리도 현안 법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 실국에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법안 통과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관: 관련 실국
		○ 도 5급 및 6급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내실화 추진 - 변화하는 도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급(팀장급 및 6급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도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주관: 인재양성과
		(무선· 전세 증정과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우리도 외국인 지원 정책 홍보 철저 -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4월중) 와 함께, 우리도가 추진 중인 모든 외국인 지원 정책을 총괄 정리하여 언론, 기업 등에 적극 홍보, 도내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관: 대외협력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우수인력의 창업 도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철저 대학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 및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해 RIS(지역혁신사업)에 창업분야를 포함하여, - 우리도에서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바람 (주관: 교육협력추진단/ 협조: 창업지원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바가지 요금 방지 철저 - 3월 말부터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관광객 밀집이 예 상되므로, 교통혼잡을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특히, 지역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대 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주관: 일자리민생경제과, 안전정책과)
		○ 봄철 산불 예방 대응 활동 철저 - 산불 발생의 절반 이상이 봄철에 집중되어 있고, 원인이 논·밭두렁 소 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이 대부분이므로, 산불 예방 관련 주민 계도활동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최근 도내 산불발생 현황》 ○ 순창 인계면(3.18, 0.15ha), 전주 완산칠봉(3.18, 0.03ha), 옥도면(3.17, 0.15ha), 임실 청웅면(3.16, 2ha), 장수 (3.15, 0.02ha)
		(주관: 산림녹지과)

군산시 고시 제2024-3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시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2-171호(2022.10.28.)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구암동 355-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3월29일군산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구암동 355-2번지 외 44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나. 명 칭 : 구암동 355-10번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당초] 대로 1-4호선 : B=3.7~4m, L=255m, A=892m²(폭원확장구간 개설)

중로 2-188호선 : B=15~17m, L=68m, A=1,132㎡(노선 신설)

소로 1-110호선 : B=2m, L=167.7m, A=351㎡(폭원확장구간 개설)

[변경] 대로 1-4호선 : B=3.7~4m, L=255m, A=892m²(폭원확장구간 개설)

중로 2-188호선 : B=15~17m, L=68m, A=1,143㎡(노선 신설)

소로 1-110호선 : B=2m, L=167.7m, A=372㎡(폭원확장구간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당초] ㈜도아디앤씨 대표 정호경(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9)

[변경] 교보자산신탁㈜ 대표 조혁종(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22. 10. 28. ~ 2024. 12. 15.

[변경] 2022. 10. 28. ~ 2027. 12. 15.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참조)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대로 1-4호선

[당 초]

λul	01=1	7] U]	- 1 □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nl ¬
순번	위치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1		480-8	장	2,034	148	군산시					
2		480-10	장	454	182	군산시					
3	군산시 구암동	480-13	장	7,144	395	군산시					
4		601-67	장	954	26	군산시					
5		601-126	장	661	141		충북 청주시 홍덕구 대농로17 108동3403호(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93	지상권 근저당	
계	계 5필지		11,247	892							

[변 경]

الد خ	ر (م	-1 v)	-) II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w) =
순번	위치	지번	지목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용	비고
1		480-29	장	150	150	군산시					
2	군산시	480-31	장	228	174	군산시					
3	구암동	480-34	장	398	398	군산시					
4		601-126	장	170	170	김대선	충북 청주시 홍덕구 대농로17 108동3403호(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	으뜸신용 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93	지상권 근저당	
계	2	4필지		946	892						

도

나. 중로 2-188호선

[당 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て 也	귀시	시 빈	기박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그
1		355-1	구	46	7	교보자산산탁주식회사	장담내도 400				
2		355-2	대	2,695	32	교보자산산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3		355-7	구	45	45	군산시					
4		355-8	대	216	216	군산시					
5		355-9	대	66	66	군산시					
6		355-13	구	8	8	군산시					
7		355-14	대	10	10	군산시					
8		355-15	대	3	1	군산시					
9		356-4	전	12	12	군산시					
10		356-5	대	1	1	군산시					
11		356-8	전	36	36	군산시					
12		480-5	장	350	1	군산시					
13	군산시	480-6	구	1,405	1	군산시					
14	구암동	480-10	장	454	57	군산시					
15		480-11	구	4	4	군산시					
16		480-20	장	38	21	군산시					
17		480-21	장	41	41	군산시					
18		480-22	장	26	26	군산시					
19		480-23	장	36	21	군산시					
20		480-26	장	57	57	신기우	군산시 외산4길 32(구암동)				L
21		480-27	장	135	53	군산시					
22		480-28	구	6	6	군산시					
23		601-22	대	69	24	김찬규	군산시 구암동 417				
24		601-23	대	73	73	임은미	군산시 구암3 1로 30 202동 1106호(현대메트로타워2차)				1
25		601-24	대	89	89	신기우	군산시 외산4길 32(구암동)				<u>_</u>
26		610	도	5,883	224	국 (국토교통부)					
계	2	6필지		11,804	1,132						

[변 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c U	되시	기빈	기막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HID
1		355-17	구	7	7	교보자산산탁주식회사	강담내도 400 -				
2		355-18	대	32	32	교보자산산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3		355-7	구	45	45	군산시					
4		355-8	대	216	216	군산시					
5		355-9	대	66	66	군산시					
6		355-13	구	8	8	군산시					
7		355-14	대	10	10	군산시					
8		355-19	대	1	1	군산시					
9		356-4	전	12	12	군산시					
10		356-5	대	1	1	군산시					
11		356-8	전	36	36	군산시					
12		480-31	장	228	54	군산시					
13	군산시 구암동	480-11	구	4	4	군산시					
14	, , ,	480-20	장	11	11	군산시					
15		480-21	장	40	40	군산시					
16		480-22	장	26	26	군산시					
17		480-39	장	31	31	군산시					
18		480-26	장	45	45	신기우	군산시 외산4길 32(구암동)				
19		480-42	장	70	70	군산시					
20		480-28	구	6	6	군산시					
21		480-40	장	2	2	군산시					
22		601-128	대	45	45	김찬규	군산시 구암동 417				
23		601-23	대	73	73	임은미	군산시 구암3 1로 30 202동 1106호(현대메트로타워2차)				
24		601-24	대	68	68	신기우	군산시 외산4길 32(구암동)				
25		610-25	도	234	234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그색시	O p. 1,1 200				
계	2	25필지		1,317	1,143						

도

다. 소로 1-110호선

[당 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국	권리자	비고
世也		시 빈	시속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미끄
1	군산시 구암동	486-2	답	1,422	18						
2		486-7	답	992	21						
3		486-8	답	1,222	2						
4		486-12	답	331	10	교보자산신탁	서울특별시 서초구				
5		486-13	답	231	7	주식회사	강남대로 465				
6		486-14	답	231	7						
7		486-15	답	342	9						
8		488-2	구	1,481	33						
9		488-9	도	26	6	국 (국토교통부)					
10		488-15	장	143	4	군산시					
11		488-27	장	397	33	군산시					
12		503-1	대	119	1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13		610	도	5,883	13	국 (국토교통부)					
14	경암동	486-4	도	1,666	187	국 (국토교통부)					
계	1	4필지		14,486	351						

[변 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군빈	귀시	시빈	시속	(m²)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끄
1		486-17	답	65	65						
2		486-18	답	49	49						
3		486-19	답	19	19						
4		486-20	답	26	26						
5		486-21	답	18	18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6		486-22	답	19	19	1 7-4-1	0 E 417 400				
7		486-23	답	24	24						
8	군산시	488-33	구	33	33						
9	구암동	488-35	대	2	2						
10		488-36	도	5	5	국 (기획재정부)					
11		488-38	장	4	4	군산시					
12		488-40	대	3	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13		488-41	장	33	33	군산시					
14		503-2	대	29	29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15		610-27	도	14	14	국 (기획재정부					
16	경암동	486-22	도	29	29	국 (기획재정부					
계	1	6필지		372	372						

군산시 고시 제2024-4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나운동 188-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3월29일군산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88-7번지 외 3필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나. 명 칭 :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 주차장 확장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의 면적 : 1,997 m²

나. 사업의 규모 : 조경휴게소1 주차장 확장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4.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참조)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도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2	소 유 자		권이외의 리자	비고
번	7, ,		목	(m²)	(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합계			14,865	1,997					
1	군산시 나운동	188-7	야	3,296	1,12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군산시 나운동	188-1	수	3,149	4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군산시 나운동	201-2	인 기	1,478	679	군산시				
4	군산시 나운동	산239-2	디	6,942	186	군산시				

익산시 고시 제2024-57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익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가. 결정조서

H	도면	บบา	0) =1		면적(㎡)		최초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	사회복지시설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	증) 26,437	26,437	금회		

나. 결정사유서

도면표			
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 사회복지시설 신설	•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통
	12142	- 위치: 함열읍 와리	해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1	사회복지 시설	294-23번지 일	가진 청소년에게 정상적인 성장과
	71 ਦ	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등
		- 면적: 26,437㎡	을 지원하기 위함

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조서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가. 결정조서

구분	규모			_	연장		_	사 용	주요	최초	_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 태	경과 지	결정 일	비고
신설	소로	2	43	8~10	국지도 로	77	대로1- 1	소로2-1 6	일반 도로	-	금회	노선 신설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2-43	• 노선신설(B=8~10m, L=77m)	•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주변 마을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통 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도면: 실음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4-36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2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완 주 군 수 2024년 3월 29일

1.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조서

7 13	도면	रो क्षेत्र	ó) =1		면 적 (m	최 초	ען ט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완주1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3,947	증)739	4,686	완주군고시 제2004-429호 (2004.11.19.)	

나.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완주 1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위치: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464-75번지 일원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1223-2번지 일원 - 면적: 3,947㎡ → 4,686㎡ (증)739㎡) - 시설용량: 800㎡/일→ 1,400㎡/일 (증)600㎡/일)	○기존 지번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소양면 하수처리구역의 증가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보전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4-38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2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와 주 군 수 2024년 3월 29일

1.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 조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	1	3	20	집산 도로	392	대로1-2 구만리 43-2	구만리 43-24	일반 도로	=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_	중로1-3	∘ 도로 신설 - 폭 20m, 연장 392m	•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다.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변호		., .,		면 적 (m²)		최초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4	주차장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	ı	증)62,222	62,222	_	

라.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62,222m²	◦만경강 거점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한 생태문화 거점시설 조성 등 미래 이용 수요 증가를 대비한 편익시설 확충

2.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무주군 공고 제2024 - 361호

제2941호

무주군계획시설(생태모험공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당산리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의 무주군계획시설(생태모험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 하여 「농지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 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무 주 군 수 2024년 3월 29일

- 1. 공람공고 내용 : 무주군계획시설생태모험공원 실시계획인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청취
- 가. 농업진흥지역등의 해제
 - (1) 농업진흥지역등의 해제 내역

0 = 7 22	ælil		동지(m')					
용도구역별	합계	계	전	답	구	비농지		
농업진홍지역	9,949	9,847	2,570	5,330	1,947	102		
농업진흥구역	-	-	-	-	-	-		
농업보호구역	9,949	9,847	2,570	5,330	1,947	102		

농업진흥지역(9,590m²) → 농업진흥지역밖(9,590m²)

※ 전체 농업진흥지역(9,949m²)중 도로구역(359m²)제외

(2) 농업진흥지역등의 해제 토지의 조서

구분	5	지소재기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농업진홍지역 해제	비고
ੀ ਦ	군	숇	리	기원	시도	(m²)	(m²)	면적(m³)	비포
	총	계		_	-	32,712	9,590	9,590	
1	무주	무주	당산	1794-9	도	92	59	59	
2	"	"	"	1794-23	전	338	338	338	
3	"	"	"	1796	구	21,517	1,353	1,353	
4	"	"	"	376-2	답	534	388	388	
5	"	"	"	377	377 답 2,941		2,941	2,941	
6	"	"	"	377-1	구	74	74	74	
7	"	"	"	378-1	전	1,160	1,092	1,092	
8	"	"	"	378-2	전	811	811	811	
9	"	"	"	378-3	3 달 2,201 1,083 1,083		1,083		
10	"	"	"	378-4	구	208	208	208	
11	"	"	"	379-1	답	2,062	747	747	
12	"	"	"	379-6	구	44	44	44	
13	"	"	"	379-7	구	145	11	11	
14	"	"	"	559-25	구	192	192	192	
15	"	"	"	559-26	임	10	10	10	
16	"	"	"	597-4	구	14	14	14	
17	"	"	"	595-5	구	19	19	19	
18	"	"	"	598-2	전	329	203	203	
19	"	"	"	598-5	구	21	3	3	

-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무주군청 건설과
- 3. 공고기간 : 2024. 3. 29.(금) ~ 2024. 4. 12.(금) 14일간
- 4. 주민의견제출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설과 (063-320-24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5.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및 관련도면: "실음생략"

0

고창군 공고 제2024-586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도로)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4-113호로 공고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계획내용의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군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9일 고 창 군 수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174	8	국지 도로	661	광장10호 월곡리254-2	월곡리117-2	일반 도로	공설운동장	고창고19 (15.03.13.)	
변경	소로	1	174	10	국지 도로	658	광장10호 월곡리253	월곡리117-2	일반 도로	공설운동장		

○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0	소로2-174	소로1-174	○변경 - B=8m → 10m - L=661m → 658m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도로선형 변경

○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13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ਦ	エ민빈모	시설경	π 4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변경	27	노외주차장	공음면 칠암리 604-20	4,324	감) 558	3,766	전북고-40 (15.03.13.)	
폐지	32	노외주차장	홍덕면 홍덕리 162-2 일원	3,142	감) 3,142	-	전북고-40 (15.03.13.)	
폐지	36	노외주차장	고창읍 읍내리 374-2 일원	1,290	감) 1,290	-	고창고-152 (17.11.17.)	

○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주차장	• 변경 4,324㎡→3,766㎡ 감)558	• 개설된 현황에 맞게 주차장 변경
32	주차장	• 시설폐지	• 개설계획이 없어 금회 주차장 폐지
36	주차장	• 시설폐지	• 개설계획이 없어 금회 주차장 폐지

○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 당초

	т н	드러비수	기기하	د دا		면 적(m²)			ul =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H 4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circ	신설	1	공공공지	아산면 운곡리 산103-4번지 일원	_	증) 15,131	15,131		

○ - 변경

		규 모			d	연장	여자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둥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0	신설	소로	3	916	4	특수 도로	3,700	아산면 운곡리 산103-4	아산면 용계리 450-2	보행자 전용 도로	운곡습지	금회 신설	

○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 B = 4m - L = 3.7km	• 기존 현황도로(통행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회 신설

○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0

- 3.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6)
- 4. 기타 : 열람내용 및 관계서류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합니다.